

창원지방법원 2021. 4. 20 선고 2021가단605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조합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4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(소관: 창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)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구민경

별지